

■ 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[별지 제41호 서식]

「고용촉진장려금('21.9.1.~9.30. 채용)」 사전 신청서

※ 동 사전 신청서는 지원 규모 확인 및 지원 요건 안내를 위한 것으로, 지원금은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6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. 사업장 현황 | | | |
| 사업장명 | | 사업장관리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 | |
| 소재지 주소 | | 대표자 | |
| 담당자 (신청서 작성자) | 성명 | | 전화번호 |
| | 전자우편 (이메일) | | 핸드폰번호 |

2. 사업계획 개요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일 | [] 2021. 9. 1. ~ 2021. 9. 30. |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계약 유형 | []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| []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 전 직업안정기관 등 구직등록 | [] 해당 | [] 비해당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 | [] 해당 | [] 비해당 |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대상자 | | 명 | |

< 주요 지원요건 >

※ '21.9.1.~9.30. 기간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(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)

※ 고용 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하고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자를 채용

「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):

(서명 또는 인)

()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